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1) 상정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1)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 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1호, 2006. 6. 5 공포시행)이 각각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527호, 2006. 6. 15 공포, 2006. 7. 1 시행)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3호, 2006. 6. 15 공포, 2006.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 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

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안가능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 제안으로 제출 가능
- 소속기관장의 동의 없이 3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개선(안 제10조)

- 창안등급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노력제안으로 의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14조·제16조·제25조 및 제28조)

-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실시부서에서 결정 하여야 하며, 불 채택 통지시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채택제안은 실시부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안 제19조·제20조 및 제21조)

-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우수제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상금지급 확대 및 노력 제안상을 신설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수립·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 범위 규정(안 제24조)
 -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함.
- 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운영(안 제29조)
 - 실시부서에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참여현황 누진제를 실시하여 2년 단위로 누적점수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제안의 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하게 된 사유는?	○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추진에 혁신을 기하고자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였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46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491호, 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1호, 2006. 6. 5 공포시행)이 각각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19527호, 2006. 6. 15 공포, 2006. 7. 1 시행)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3호, 2006. 6. 15 공포, 2006.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 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안가능
-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실제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 제안으로 제출 가능
- 소속기관장의 동의 없이 3인 이상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운영개선(안 제10조)

- 창안등급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노력제안으로 의결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14조·제16조·제25조 및 제28조)

-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실시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시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채택제안은 실시부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라.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안 제19조·제20조 및 제21조)

-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우수제안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부상금지급 확대 및 노력 제안상을 신설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수립·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 범위 규정(안 제24조)

-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고안·디자인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함

바. 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운영(안 제29조)

- 실시부서에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참여현황 누진제를 실시하여 2년 단위로 누적점수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의 선정
5.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3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8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⑤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5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마일리지 포상) ①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②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에게만 부여한다.

③포상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2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관련)

구 분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업무 관련 창안 채택	금 상	특별승급 1호봉	0.8	
	은 상	희망부서	0.6	
	동 상	전보 우선권 부여	0.4	
	장 려 상		0.2	

비 고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20조관련)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500만원	90점 이상
은 상	300만원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80점 이상
장 려 상	50만원	70점 이상
노력제안	10만원상당의 기념품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제29조관련)

○ 마일리지 점수기준

(단위 : 점)

구 분	실시부서 채택제안	실무위원회 채택 (노력제안)	비 고
점 수	10	20	

[비고] 창안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은 마일리지 미부여

○ 마일리지 포상기준

누적점수	시 상 금	비 고
60점 이상	50만원	
50점 이상 ~ 60점 미만	40만원	
40점 이상 ~ 50점 미만	30만원	
30점 이상 ~ 40점 미만	20만원	
20점 이상 ~ 30점 미만	10만원	